

## 제4장 실무실습 운영세칙

제19조(실무실습 운영) ① 이 운영세칙은 「부산대학교 학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한다) 제9조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의 실무실습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필수실무실습과 심화실무실습 교과목의 교육시기 및 기간은, 실무교육기관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통상적인 학사운영기간(정규학기)과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.

③ 필수실무실습과 심화실무실습 교과목을 수강할 학생은 졸업요건에 부합하는 직전학년(5학년)까지의 전공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필수실무실습 제약행정(제약회사 및 약무행정)의 경우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직전학년(5학년)에 미리 실습 할 수 있다.

<부칙>

이 지침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